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27일
발 의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0. 10. 16. 홍성룡 의원이 발의(찬성자 10명)하여 2020. 10.26.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45호)과
2021. 4. 1. 김인호 의원이 발의(찬성자 24명)하여 2021. 4. 6.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87호)과
2021. 4. 2. 박상구 의원이 발의(찬성자 17명)하여 2021. 4. 6.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1호)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의안번호 제1945호, 제2287호, 제2301호 개정안의 안 제2조제1호에서 각각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수정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합·조

정하고, 의안번호 제1945호 개정안은 “건설사업자”, 의안번호 제 2287호 개정안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여 호 번호를 부여하며,

- 의안번호 제1945호 개정안 제9조에서는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안번호 제2287호 개정안 제9조에서는 부적격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중복 조항번호 정리 및 현행 조례의 조항번호를 조정 하는 등의 보다 합리적인 체계로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각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통합·조정함(안 제2조제1호).
- “건설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건설일용근로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부적격업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 고용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부적격업체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를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 또는”으로, “공사업을 말한다”를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일용근로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6. “부적격업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조번호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분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 (부적격업체 단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 「<u>건설산업기본법</u>」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u>공사업을 말한다.</u></p> <p>2.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 (정의) ----- -----.</p> <p>1. ----- ----- ----- 「<u>건설산업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u>건설산업 또는 ----- -----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유통업을 말한다.</u></p> <p>2. 3. (현행과 같음)</p> <p>4. “<u>건설사업자</u>”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5. “<u>건설일용근로자</u>”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한다.</p> <p>6. “<u>부적격업체</u>”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p>

<신 설>

제9조 (고용개선 지원) ① 발주청과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정 지원금과 제3항의 고용개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 설>

제10조 (부적격업체 단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단속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단속(민원 또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기단속 등의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속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한다.

⑤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 · 제10조 (생략)

제11조 · 제12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